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알림

1. 관련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관련 질의 회신(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4283호, 2018.11.15.)

2.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따라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동계 현장실습 운영을 앞두고 있는 대학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학생 현장실습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포함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설명회를 '18.12월초 개최 예정임

붙임 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1부
2.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1부. 끝.

교 육 부 장



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

주무관

임동수

행정 사무관 **엄중훈**

교육일자리총괄과장

전결 11/16

고영종

협조자

시행 교육일자리총괄과-4311 (2018.11.16.) 접수 현장실습지원센터-536 (2018.11.17.)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 www.moe.go.kr
14동 교육부 (어진동)

전화 044-203-6885 전송 044-203-6731 / lim104@korea.kr / 공개(1,2,3,4,5,6,7,8)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현장실습 정의

① 개정 고시의 '현장실습생'의 범위는?

-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자

② 개정 고시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 ❖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을 포함
 - *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 단, 산재노출 우려에 대한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업무 종사가 없는 견학(observation)은 제외하며
 - * 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아울러, 보육·간호·사회복지실습과 같이 전문자격 취득의 요건으로서 필수 이수과목인 현장실습은 제외함

③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 ❖ 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현장실습생 법적지위

④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봄
 - * (주의) 일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인정"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非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며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

-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⑥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에 해당

⑤ '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⑥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준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 의미·범위

⑦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 순수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해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⑧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4대보험 전체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도 발생하는지?

- ❖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외 4대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신고·납부 의무발생 시점

⑨ '18.9.11일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어야 하는지?

-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 ❖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19.3.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⑩ '18.9.11일부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지?

- ❖ '18.9.11일부터 월별 현장실습생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
- ❖ 다만, 누락분이 있더라도 '19.3.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다면 불이익은 없음

보험료 산정 방법

⑪ 개정 고시의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 현장실습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12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산정 방법은?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합산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13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보험료 산정 방법은?

❖ 무급 현장실습도 예외없이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의 방법으로 산정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신고·납부 미이행시 적용·제재

14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시 보상을 받음

15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 산재발생시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50%,
보험료 미납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가 징수됨*

* 단, 징수액 한도는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 다만, 현장실습생 가입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다음연도 3.15일에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는 경우, 미가입·미납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음

보상범위·수준

16 보상범위 및 수준은?

- ❖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 ❖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산재발생시 사업주 배상범위

17 현장실습생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배상범위는?

-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됨(산재보험법 제80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 9.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칙 <제2018-69호, 2018. 9.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수신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경유)

제목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실습생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 적용 범위가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으로 한정되어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고용노동부고시를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의한 현장실습생도 '18. 9. 11.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이 널리 홍보되어 실습생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 대학 현장실습생 및 현장실습 사업장에 다음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사항>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 (적용 대상)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 ※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현장실습생 등을 포함한 모든 현장실습생으로서 시행일('18.9.11) 이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시행일 현재 현장실습 중인 사람 포함)
- (가입 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
- (보험료)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에 대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
-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일반 근로자의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수신자

과장	정용석	차장	김광배	적용계획부장	김상철	전결 09/21
----	-----	----	-----	--------	-----	----------

협조자
시행 적용계획부-3832 (2018.09.21.) 접수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
전화 0527047213 전송 /connoisseur@kcomwel.or.kr / 대국민 공개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고용노동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의 산재보험 적용 안내

1. 관련: 청년취업지원과-861('18.3.19, 2018년 재학생 직무체험 및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참여 연수생에 대한 재해보험 일괄가입? 계약체결 안내)
2. 위 호 관련, 일경험지원사업인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직무체험과 중소기업탐방을 안심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 재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을 가입하였으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시 2018-69호, '18.9.11.)?가 개정, 적용범위가 확대(직업계고→4년제 및 전문대학)됨(붙임 참고)에 따라
 - '18.9.11.부터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산재보험에 적용됨을 알려 드리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기존 보험 적용)

붙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시) 보도자료 1부. 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수신자 동의대학교총장, 고신대학교총장, 동명대학교총장, 경성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주무관

김경아

팀장 김영민

과장

전결 09/27

손영기

협조자

시행 취업지원과-8712 (2018.09.27.)

접수 현장실습지원센터-444 (2018.09.27.)

우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 <http://moel.go.kr/busan>

시청역롯데골드로즈) 부산고용센터 4층

전화 051-860-2164

전송 051-719-4507

/ kab612@korea.kr

/ 공개(1,2,3,4,5,6,7,8)

보도자료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 보도일시: 2018. 9. 11(화) 석간,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인터넷 2018. 9. 11(화) 09:00 이후> 과 장 주평식 (044-202-7710)
☎ 총 4쪽 (붙임 자료 포함) 사무관 어일천 (044-202-771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보상,
재활훈련·직업교육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 * 산재보험법 제12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 적용
-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 현 행 】

【 개 정 】

범 위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 *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등 포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규 모	▶ 약 6만명(26.3%)	▶ 약 22만명(100.0%)

○ 지난 '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하였는데

-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
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면서

○ “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라고 하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044-202-771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